

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사업 운영

- ◆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(주거급여 비수급 가구)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

□ 추진근거

- 주거기본법 제15조(임대료 보조)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(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)

□ 사업 개요

- 지원 대상 :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
 - ① 민간 월세 '주택' 및 '고시원' 거주 가구
 - ②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* 이하 가구 *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소액보증금 기준
 - ③ 소득평가액 60%이하,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

○ 지원 금액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지원금액	80,000원	85,000원	90,000원	95,000원	100,000원	105,000원

○ 지원 절차

